

문서번호	자치행정과-21471
결재일자	2014.12.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자치행정담당	자치행정과장	행정국장		
이노영	위상복	박성도	12/03 손정수		
협 조					

- 2014년 4분기 -
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

2014. 12.

**행 정 국
자치행정과**

- 2014년 4분기 -
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

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통해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, 100세 이상 고령자, 고시원·여관 등 거주자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
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
- 2014년도 4/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계획 통보
(행정자치부 주민과-173, 2014.11.27)
- 2014년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 통보
(서울시 행정과-28727, 2014.11.28)

II 추진계획

- 사실조사기간 : 2014. 12. 1(월) ~ 2015. 1. 9(금) [40일간]
- 추진내용

- 제3자(채권·채무 등 이해관계자) 요청에 의한 사실조사
 - 100세 이상 고령자('14.12.31. 이전 출생자) 거주 및 생존여부
 ※ 2014.11.30. 기준, 성북구 1914년 출생자 : 30명

- 고시원·여관·쉐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
-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
-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
- ※ 사실조사 및 최고·공고 『'14.12.1~'15.1.4(35일)』 ,
직권조치 『'15.1.5~'15.1.9.(5일)』

-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
- 2014년도 4분기 도로명주소 고시내역(개별고시/변경고시) 확인 후 도로명주소로의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 변경
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,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
- ※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: '14.12.1(월) ~ '15.1.9(금)[40일간]
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최대 3/4까지 경감 부과 및 징수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% 경감
- 다가구주택의 건축물의 이름, 동 번호와 호수 오류자료 정비
- 주민등록 업무처리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
- 2014년 4분기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용실태 점검 실시

○ 기관별 역할

[구청]

- 사실조사 추진계획 수립, 동 지원 및 직원교육, 현장지도
- 홍보 철저로 민원인 혼란 최소화 및 원활한 주민 협조 유도, 특히, 반상회 및 통·반장 등을 통한 대면 홍보 강화

[동 주민센터]

- 동장 및 담당을 정·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
- 사실조사 추진계획 수립, 통장 지원 및 직원교육, 민원안내
- 각종 회의시(통장, 관련단체 등) 대면 홍보

III 세부 추진계획

《 조사절차 요약 》

- 사전홍보를 통한 주민협조 유도 및 마찰 방지
- 사실조사용 세대명부 출력, 조사 실시
- 주민신고사항 상이자 주민등록 이전 조치 및 직권조치
- 동주민센터별 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

1. 사실조사 홍보 : 2014.12.1.(월) ~ 2015.1.9.(금) [40일간]

○ 홍보 방법

- 성북소리, 홈페이지, 각종 게시판 공고, 특히 대면홍보
-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방송안내 및 안내문 배포·게시
- 구청 및 동주민센터 전광판 홍보

○ 홍보 내용

-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, 무단 전출자,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협조 당부
-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토록 유도

2. 사실조사 및 최고·공고 : 2014.12.1. ~ 2015.1.4.[35일간]

○ 조사자 :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

※ 필요시 통장 합동으로 조사, 세대 방문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 제시하여 민원 발생 예방

○ 명부 작성

- 사실조사를 위한 스크립트(세대명부 추출 프로그램)를 활용·명부 출력

※ 사실조사 대상

- 무단전출 의심자(이해관계자 등 제3자 요청포함)
- 100세 이상 고령자(1914.12.31. 이전 출생자)
- 고시원·여관·쉼터 등 거주자
-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
-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

○ 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

-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시행령 별지 제19호 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이용하여 반드시 현장 방문조사 실시

※ 사실조사원은 사실조사시 반드시 시행령 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여 불필요한 민원 예방

-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·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 등록 조치

※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될 수 있음을 안내

-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

-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 사실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회신

-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 부서와 협조하여 기초노령연금 등 수령 여부 사전 확인 후 사실조사 실시

※ 고령자의 거주 여부 사실조사시 고령자 가족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념하여 사실조사

-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 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고 후 사망 말소자로 직권 조치*하고, 사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·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

※ 이 경우에도,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 또는 가족 등이 있음이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우선하도록 안내

- 국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, 관계기관(법무부)에 국외이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표 정리

○ 최고·공고 및 주소이전 안내

-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안내

- 최고장 발송(7일 이상) :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

- 게시판 공고(7일 이상) :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

3. 직권조치 : 2015.1.5. ~ 2015.1.9.[5일간]

○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,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

※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되어 통지할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 공고

※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: 영 제25호 서식 활용

4. 과태료경감 : 2014.12.1.(월) ~ 2015.1.9.(금)[40일간]

○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, 제40조 제3항에 의거 **과태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**으로 하되,

-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**경제적 사정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과태료의 3/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**

< 과태료 부과금액 >

제21조(과태료)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

▷ 신고(신청)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(1만원), 1개월 이내(3만원), 3개월이내(5만원), 6개월 미만(7만원), 6개월 이상(10만원)

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

▷ 신고(신청)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(5천원), 1개월 이내(2만원), 3개월이내(3만원), 6개월 미만(4만원), 6개월 이상(5만원)

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(신청)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.
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3/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

<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>

제2조의2(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5. 미성년자

※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함

○ 징수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**과태료의 20%를 추가경감 가능**

<질서위반행위규제법>

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<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>

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IV 행정 사항

- 특별사실조사 결과보고 : '15. 01. 12(월)까지
 - 특별사실조사 결과보고 및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표

붙임 : 1. 특별사실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
2.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표 1부. 끝.